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목적

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2. 계약기간

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 만료일까지로 한다.

이용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한다.

3.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

[월 이용료]

장기요양등급 이용어르신은 장기요양재가급여한도액 이내로 이용하여야 하며, 이를 초과할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다.

등급별 및 이용시간별 차등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정해져 있으며, 본인부담금은 어르신의 본인부담금 비율(기초: 0%, 의료:6%, 감경:9%, 감경 6%)에 따라 정해진다.

급여비용은 18시 이후 이용시간에 대해 20%가산하고, 휴일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30%가산한다. (별표1 참고)

[그 밖의 비용]

식사비, 간시비 등 기타 실비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다.

기타 실비 예시: 개인 의료비(병원진료, 약제비, 의료용품 등). 본인 또는 보호자 요청에 의한 개인용도의 물품구입 등

4.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[권리]

-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할 수 있는 권리
-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- 수급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
-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,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-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

[의무]

- 수급자 건강,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
-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- 인적사항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-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
-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,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5. 계약의 해제

-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
-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센터의 동의 없이 이용자가 임의로 변경한 경우
-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-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등급외자로 변경 된 경우
- 수급자의 배회 또는 폭력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다른 어르신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
- 수급자가 계약시 제시 된 이용안내를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
- 어르신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- 수급자 혹은 보호자가 3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